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대전보건대학교

목차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 ① 자연재난
- ② 사회재난

2. 안전사고

- ① 대학 안전사고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③ 연구실사고

3. 감염병 확산

-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 범죄

- ① 일반범죄
-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① 산업재해
- ② 중대재해

6. 기타

- ① 비상사태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 가입 총괄 현황
2. 대학배상 책임보험
3. 교육시설 안전보험
4. 연구실 안전보험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 안전훈련
2. 대학안전사고 예방교육
3. 대학종사자 안전보건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5. 감염병 예방교육
6. 성범죄 예방교육
7. 비상사태 교육·훈련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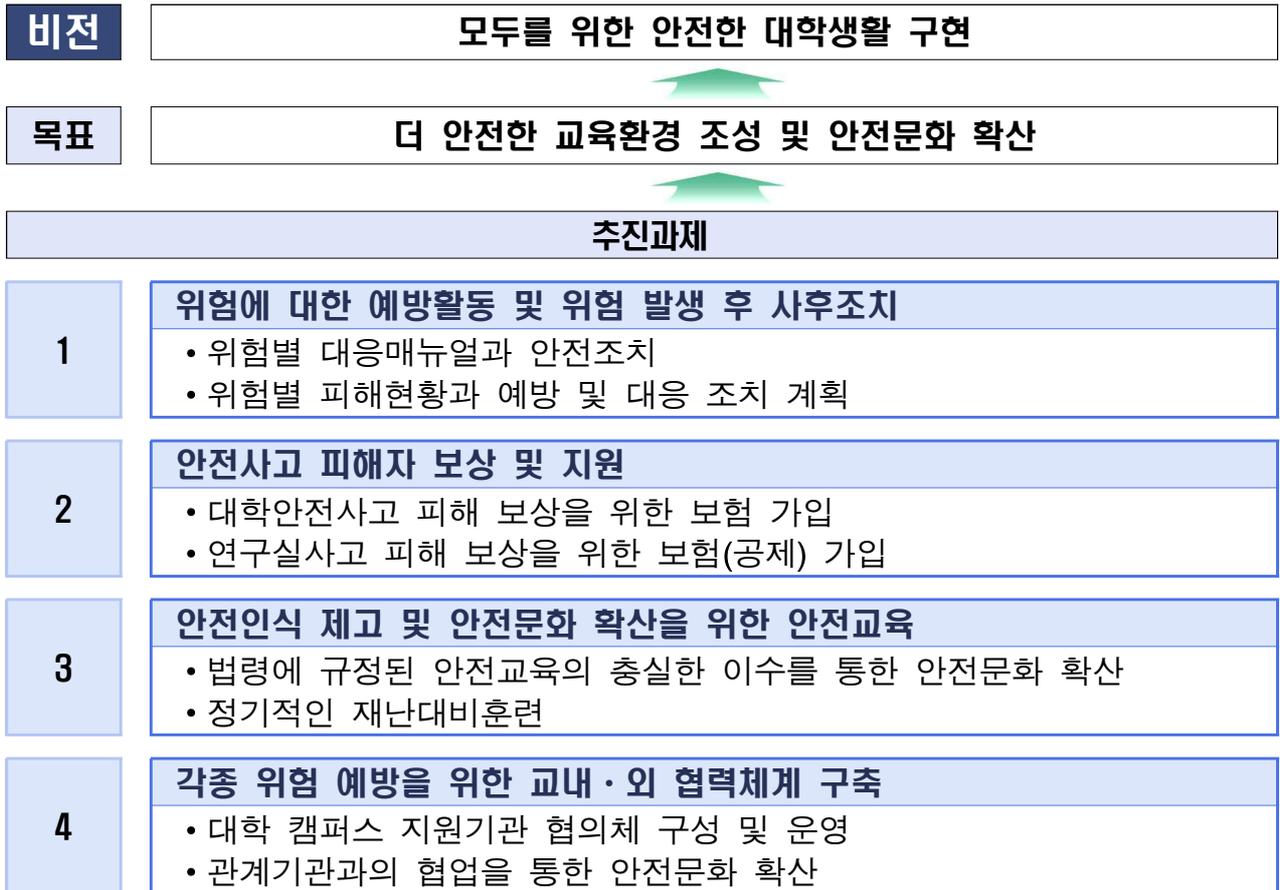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I 학교안전관리 계획 개요

1.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총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 현황

학교명	대전보건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21(가양동 77-3)				
전 화	042-670-9000	FAX	042-670-9564	홈페이지	htt://www.hit.ac.kr
총장	이병기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이영호 (사무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2.04.0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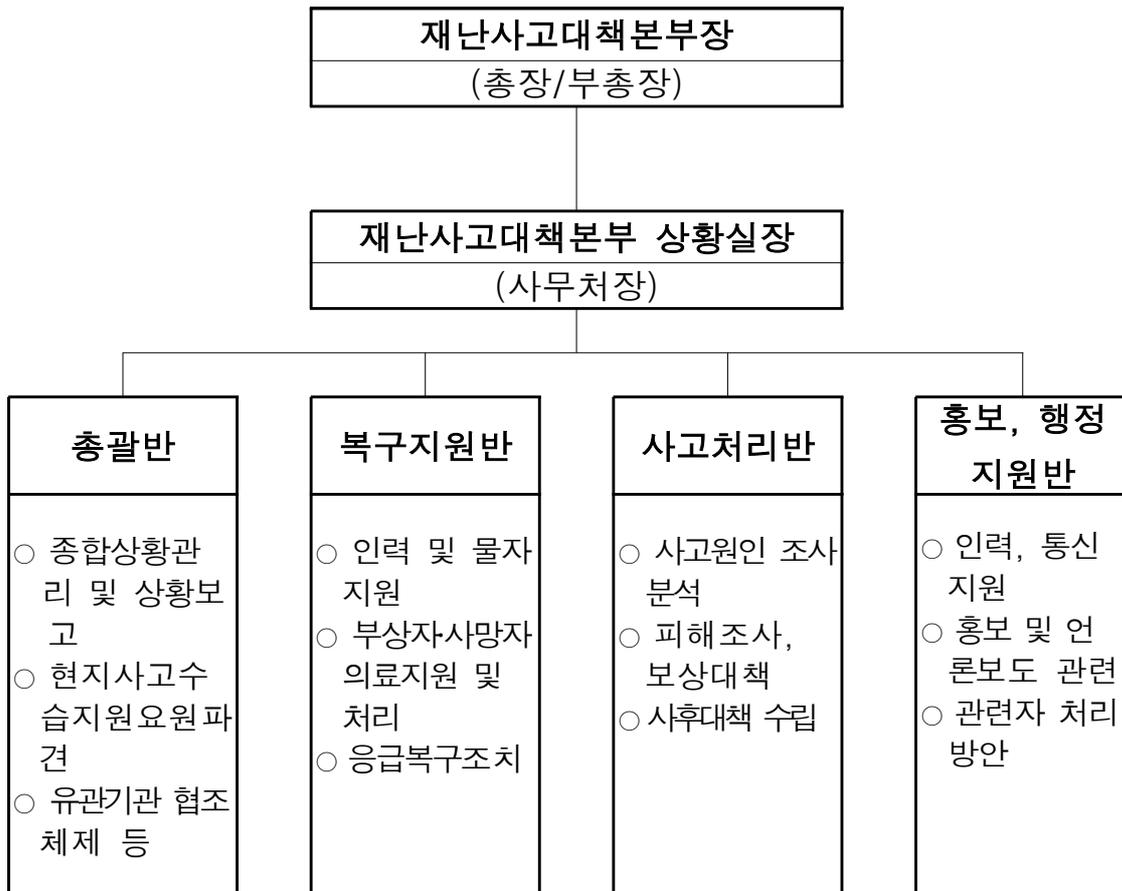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4,815명	0	0	5,175명	

교직원 (명)	전임교원	행정직원	조교	기타	합계
	150	83	41		274

□ 비상대피안내도



2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팀	
1. 재난	자연재난	관리팀	총무팀
	사회재난	관리팀	총무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팀	총무팀/건강관리실
	교육시설안전	관리팀	학생팀
	연구실 사고	관리팀	
3. 감염병	코로나 19	건강관리실	학생팀/관리팀
4. 범죄	일반범죄	학생팀	관리팀
	성범죄	학생팀	건강관리실/인사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팀	인사팀
	중대재해처벌법	총무팀	인사팀
6. 기타	비상사태	예비군대대	관리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E-mail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건강관리실	담당자	박춘숙	042-670-9631	pcs1202@hit.ac.kr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예비군대대	대대장	은한규	042-670-9147	eunhk@hit.ac.kr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방진웅	042-670-9071, bjw2458@hit.ac.kr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안전 교육) 자체 예방·대응 내부교육을 통해 태풍 등의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자연재난 대응능력 제고
- (전광판 등 홍보활동) 교내 입구에서 잘 보이는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홍보 활동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계	0	0	0	0	

②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강의동, 기숙사, 대강당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기구 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 및 관리, 화재경보기,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 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방화안전 관리대행 및 종합점검, 작동기능점검	19	19	19	57	
1동,2동 및 3동 정밀점검	25	0	0	25	
계	44	19	19	82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학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담당자	신정훈	042-670-9043, shingoon@hit.ac.kr	
팀원	학생팀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 위험요인

- 수업, 실습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13	5	0	5	5	5.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3	5	0	5	5
	계	13	5	0	5	5

※대학경영자배상책임보험 실 청구 건 수 기준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대학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을 조성

※관련규정 3-3-7 학생활동에 따른 보험규정

- (교외활동) 대학 및 학과에서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을 시행

※관련규정 3-3-8 졸업여행 및 학과전체MT(OT) 시행에 관한 사항 / 집단연수(행

사) 안전 점검 업무지침(대학자체)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안전확보 업무메뉴얼(교육부)

○ (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대학경영자배상책임보험가입	15.5	14.2	14	43.7	
계	15.5	14.2	14	43.7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 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교내 및 주변 공사현장)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내 및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2022년 1개동 취득작업 중)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교내 및 주변 공사현장)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교육시설 안전인증	0	11	11	22	2개동
1동, 3동 정밀안전점검 및 2동 안전점검용역	25	0	0	25	
계	25	11	11	47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송민수	042-670-9061, psms@hit.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사전 대책

가. 연구(실험)실 안전 취약점 파악

- 매년 연구(실험)실 대상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자체연구(실험)실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위험요소 파악 및 실험실 등급에 맞는 개선방안 제시

나. 연구(실험)실 안전 확보 강화

- 교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연구실 내 비치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을 통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시행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 확대
- 연구실 상시점검을 통한 불안전 시설 보수
- 연구실 안전보호 시설 및 장비 확충
- 정기 및 임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시행
- 안전점검에 따른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확대 및 내실화
- 실험실 등급 및 안전시설이 취약한 실험실에 대한 개선 강화
- 실험실 규정 및 관리방안 강화
- 가스공급업체 및 가스사용 실험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위험물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제도적 개선
- 연구(실험)실 위험 요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
- 안전보건표지 배포 및 부착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사후 대책

가. 사고대응

-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조직을 총괄지휘
- 사고를 접수하고, 재난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연락 및 보고

- 사고대응장비와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사고현장으로 출동
- 사고 상황 파악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

나. 원인분석

- 사고 내용 보고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
- 보험 청구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제공
- 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
-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 내용 및 결과를 교내 조직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보험 청구 처리 및 사고 처리 내용을 보고
- 사고현장을 기록(사진촬영 등) 하고, 실험실 사고사례를 작성하여 교내에 공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연구실 보험 및 안전유지관리비	105	94	95	294	
계	105	94	95	294	

3. 감염병 확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이승한	042-670-9065, sukang@hit.ac.kr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감염자 수	0	0	2	16	1,010	206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원인분석

- 대전보건대학교 학생팀 코로나-19 대응팀 및 건강관리실 조사 결과
 - 2022년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높아졌고 학생들 및 교직원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증상자 행동수칙 및 국민행동수칙 교육 관리강화에도 확산세가 급증함.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나온 경우 보건소 및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통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함. 업무연속성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되면 대학의 각종 활동 (수업·행사·자치활동·체력단련실 사용 및 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핵심 수칙 >

제 1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 ①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합니다.
 -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합니다.

- ② 접종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제 2 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p>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p> <p>*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p>
	<p>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p> <p>*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p>
	<p>④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p>
	<p>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p>
<p>제 3 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p>	
<p>(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p>	
	<p>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고위험군 등과 밀접한 접촉 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p>
	<p>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p>
	<p>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p>
	<p>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p>
<p>제 4 수칙)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p>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번 이상,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에 활용하면 환기 효과가 증가합니다.

② 자연 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③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자연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④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⑤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제 5 수칙)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인후통, 기침, 가래,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 및 병원을 통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확진자 7일간 격리 조치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해 자가격리* 실시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대한 상태 관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보건사업(감염병 포함)	45	45	45	135	
계	45	45	45	135	

4. 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3,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담당자	신정훈	042-670-9043, shingoon@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행위(폭력, 욕설, 협박, 상해 등)를 통칭하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행위

□ 피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0	0	1	0	0	0.2
피해자 수	0	0	1	0	0	0.2

□ 원인분석

- 학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을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자체징계 처리

- 사고 처리에 따른 관계자 분리 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서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징계위원회 심의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위원회의 징계심의에 따라 대학 자체 징계처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계	0	0	0	0	

②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박춘숙	042-670-9631, pcs1202@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1	1	-	2	0.80
	성폭력	-	-	-	2	-	0.40
	계	-	1	1	2	2	1.20
피해자 수	성희롱	-	1	1	-	2	0.80
	성폭력	-	-	-	2	-	0.40
	계	-	1	1	2	2	1.20

□ 원인분석

- 현재 전체교직원 및 학생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교육 참여가 소극적임(비전임교원, 학생 등)
- 의식수준 미성숙으로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성희롱이 행해지는 조직문화 여전하고

있으며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일탈행위(성희롱·성폭력)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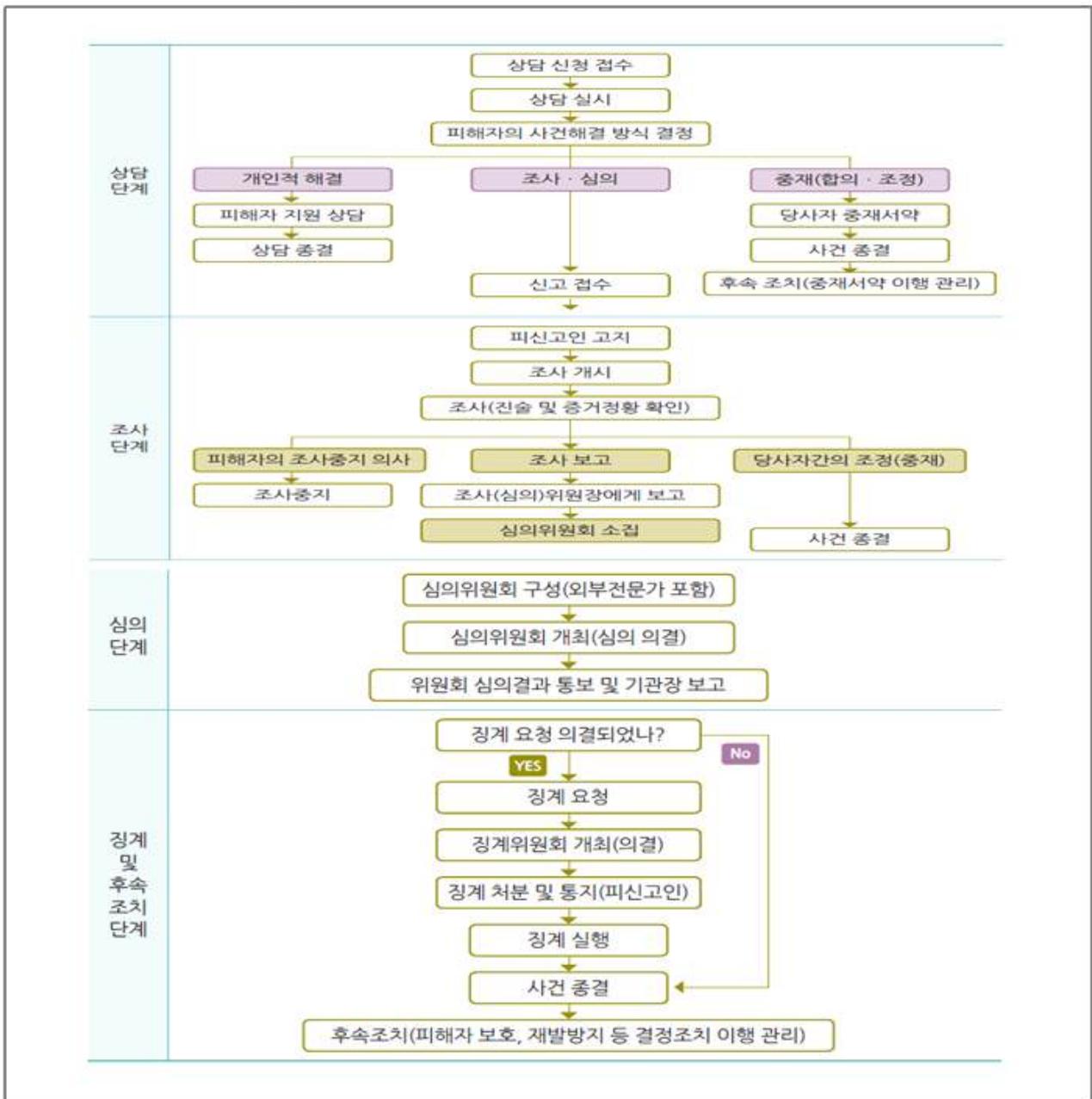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재학생 및 생활관생 대상 폭력(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예방교육 실시
 - 교직원 대상 폭력(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예방교육 실시
 -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예방교육 이수율 강화
- 피해자에 대해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 재발방지 대책 추진(안)
 - 기관장 책임 하에 내실있는 교육 실시(대면, 비대면 교육 활용)
 - 신규채용자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조치
 - 통합교육 추진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자가 점검 내용 포함 실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예방교육 시 성 고충상담/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현재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을 신고절차, 신고대상, 권리구제 등을 안내
 - 대학가 주변 원룸, 화장실 등 몰카(몰래카메라)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교내 전광판에 방영
 - 폭력예방 홍보자료(리플렛) 배포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학교 / ○○시 ○○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폭력에 방교육특강료	8	16	16	40	
폭력피해 학생지원비	10	10	10	30	
계	18	26	26	7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1 산업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담당자	정윤아	042)670-9053, yuna921@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 산업재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1	0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증)	0	0	0	0	0
	부상	0	0	0	1	0.2
	계	0	0	0	1	0.2

□ 원인분석

- 고용노동부,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합동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흡·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계	0	0	0	0	

②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담당자	정윤아	042)670-9053, yuna921@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계	0	0	0	0	

6. 기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1] 비상사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은한규	042-670-9147, eunhk@hit.ac.kr	주관부서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igw@hit.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팀	팀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 위험요인

- 공습·포격, 핵·방사능, 생물·화학무기 등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
- 국가동원령 선포가 요구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증)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국방부 개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한 체계적인 예비군 관리
- 효율적인 민방위대원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조체제 구축
- 비상사태 상황파악 및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관계 유지
- 실전을 방불케하는 예비군 훈련 실시 및 정부 주관 민방위훈련 적극동참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예비군 훈련	1.74	1.6	1.55	4.89	
민방위 훈련	0.16	0.2	0.15	0.51	
계	1.9	1.8	1.7	5.4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및 일반)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재정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대학배상책임보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교육시설안전보험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연구실안전보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4-20 2023-04-20	2.7	5,176	14,220	5	583	0	0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3-04-20 2024-04-20	2.9	4,800	14,000	0	0	0	0	예정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200,000	2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0	5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0	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100,000	100,000	
교직원배상책임	대인	200,000	2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0	5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일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일반)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일반)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한화기업 사랑종합보험	2021-12-31 2022-12-31	5,158	88,849	5,158	-	-	-	-	
2023	메리츠화재 화재특종보험	2022-12-31 2023-12-31	4,596	80,829	4,596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50,000	50,000	
치료비	5,000	5,000	
입원급여	5,000	5,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연구실 안전 보험(공제)	2021-09-17 2022-09-16	0.8	5,076	4,205	-	-	-	-	
2023	연구실 안전 보험(공제)	2022-09-17 2023-09-16	1.1	4,700	5,148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양급여	2,000,000	2,000,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정	교육내용	인원	비고
학생	2022.03.14~03.31	화재대피훈련	620	원격수업시스템이용
	2022.09.06~10.21	화재대피훈련	393	원격수업시스템이용
교직원	2022.11.09~11.11	재난대응훈련	69	훈련 실시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학생 화재대피훈련 실시(코로나19예방을 위해 비대면영상교육실시)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내용	인원	예산
학생	2023.03.10~03.31	화재대피훈련	500명내외	200,000
	2023.09.05.~09.30	화재대피훈련	500명내외	
교직원	2023.11.10~11.24	재난대응훈련	70명내외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학생 화재대피훈련 실시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시 비대면교육실시에정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담당자	신정훈	042-670-9043, shingoon@hit.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11.21	30분	300	-
교직원	2022.11.20	8시간	3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 대학 내 축제공연 행사 시설 이용 시 대피로 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05.12.	30분	300	-
교직원	2023.05.11.	1시간	3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 대학 내 축제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담당자	정윤아	042)670-9053, yuna921@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송민수	042-670-9061, psms@hit.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연구실안전관련	1	1,365	0
정기교육훈련(1학기)	.연구실안전관련	1	2,475	0
정기교육훈련(2학기)	.연구실안전관련	1	3,222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최대한 참여 홍보

*정기교육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수강신청 이수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연구실안전관련	1	1,200	0
정기교육훈련	.연구실안전관련	2	5,000	0
특별안전교육훈련	.연구실안전관련	필요시	-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최대한 참여 홍보

*정기교육의 경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수강신청 이수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이승한	042-670-9065, sukang@hit.ac.kr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대책회의	2	8	4,500,000
감염병 진료 및 보호	코로나 대응	365	2	0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메일 sns	120	2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교육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일상회복 지원지원	지원단회의	1	8	4,500,000
감염병 진료 및 보호	신속항원검사소운영	365	2	0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메일 등	10	2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교육

6.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박춘숙	042-670-9631, pcs1202@hit.ac.kr	
팀장	인사팀	김익진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04.25.~ ~2022.12.31	2	성폭력: 4,136명 가정폭력: 4,057명	800,000
교직원	2022.04.25.~ ~2022.12.31	4	267	8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성희롱 · 성매 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 2023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1	4,815 (22년 기준)	800,000
교직원	교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성희롱 · 성매 매 · 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1	267 (22년 기준)	8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성희롱 · 성매 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은한규	042-670-9147, eunhk@hit.ac.kr	주관부서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igw@hit.ac.kr	협조부서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9.26~9.29	8시간	724	1,600,000
교직원	코로나로 미 실시	코로나로 미 실시	280	2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예비군 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예비군 훈련	4	724	1,550,000
교직원	민방위 훈련	8	280	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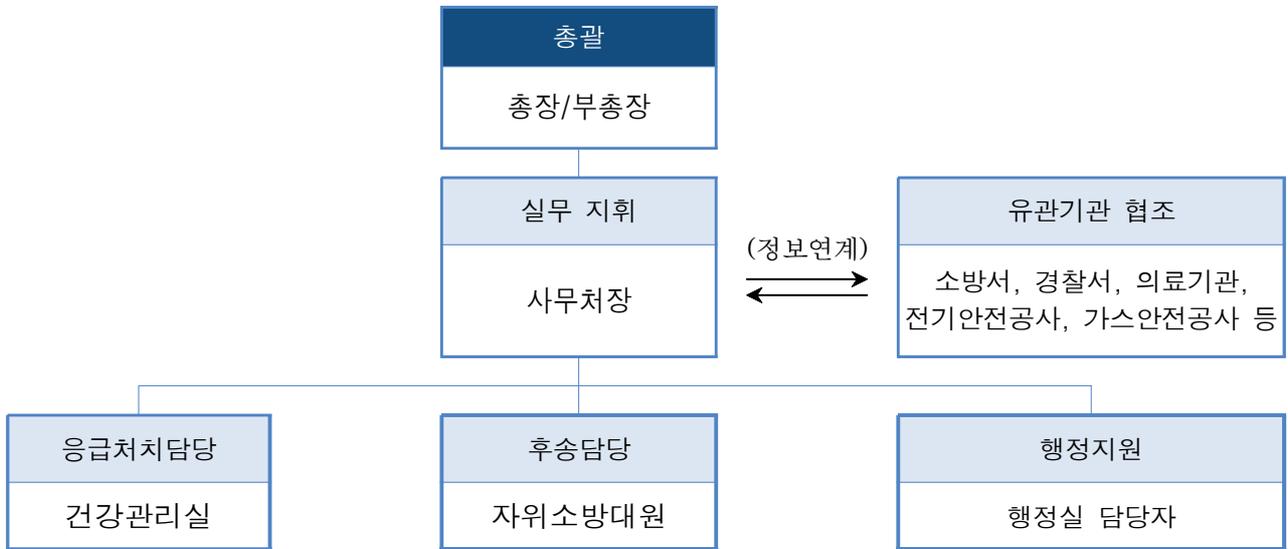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대전동부소방서	042-270-1343	119재난대응과
가양119안전센터	042-270-1225	구조대
동구청	042-251-4953	안전총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042-388-560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대전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42-123	대전세종충남본부
동구보건소	042-251-6121	
한국병원	042-606-1119	응급실
가양지구대	042-600-2172	
군부대	042-622-6113	가양동대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대전동부소방서	042-270-1343		119재난대응과
가양119안전센터	042-270-1225		구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042-388-560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대전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42-123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병원	042-606-1119		응급실
동구보건소	042-251-6121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670-9050	-	-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대전동부소방서	042-270-1343		119재난대응과
가양119안전센터	042-270-1225		구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042-388-560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대전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42-123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병원	042-606-1119		응급실
동구보건소	042-251-6121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670-9050	-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중앙사고수습본부	110(무료) 02-2100-3399		
중앙방역대책본부	1339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환경부	1577-8866		
동구 보건소	042-251-6121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270-6170	-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법무부 대전스마일센터	042-526-1295		
검찰청	1301(유료)		
경찰청	182(유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577-1295		
대전해바라기센터	042-280-8436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42-255-0004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670-9041	geejin@hit.ac.kr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대전동부소방서	042-270-1343		119재난대응과
가양119안전센터	042-270-1225		인명구조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042-388-560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대전광역시본부
한국전력공사	042-123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병원	042-606-1119		응급실
동구보건소	042-251-6121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670-9050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32사단	042-832-6775		
505여단	041-754-5915		
1대대	044-272-1113		
대전대 예비군연대	042-280-2789		
우송대 예비군연대	042-630-9686		
가양2동대	042-622-6113		
동구청	044-251-4964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670-9471	eunhk@hit.ac.kr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방진웅	042-670-9071, bjw2458@hit.ac.kr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협조부서
	② 사회재난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협조부서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담당자	신정훈	042-670-9043, shingoon@hit.ac.kr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협조부서
		③ 연구실사고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팀원	관리팀		담당자	송민수	042-670-9061, psms@hit.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김민경	042-670-9630, mamirang07@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팀	담당자	이승한	042-670-9065, su kang@hit.ac.kr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담당자	신정훈	042-670-9043, shingoon@hit.ac.kr	
		팀장	관리팀	팀장	이길원	042-670-9060, lgw@hit.ac.kr	협조부서
	② 성범죄	팀장	학생팀	팀장	김기진	042-670-9041, geejin@hit.ac.kr	주관부서
		팀원	건강관리실	담당자	박춘숙	042-670-9631, pcs1202@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담당자	정윤아	042)670-9053, yuna921@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② 중대재해	팀장	총무팀	팀장	민선오	042-670-9051, sunoh@hit.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담당자	정윤아	042)670-9053, yuna921@hit.ac.kr	
		팀장	인사팀	팀장	김익진	042-670-9101, recon07@hit.ac.kr	협조부서
		팀원	인사팀	담당자	황혜연	042-670-9103, hhyeon@hit.ac.kr	
6. 기타	① 비상사태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은한규	042-670-9147, eunhk@hit.ac.kr	주관부서
		팀장	관리팀	주무관	이길원	042-670-9060, igw@hit.ac.kr	협조부서
		팀원	관리팀	주무관	김민철	042-670-9063, kimmc69@hit.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13	5	0	5	5	5.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13	5	0	5	5	5.6
			계	13	5	0	5	5	5.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0	0	2	16	1,010	206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1	0	0	0.2	
		피해자 수	0	0	1	0	0	0.2	
	② 성범죄	발생건 수	0	1	1	2	2	1.20	
		피해자 수	0	1	1	2	2	1.2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1	0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1	0	0.2
			계	0	0	0	1	0	0.2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	0	0	0	0	
		계	0	0	0	0	
	② 사회재난	방화안전 관리대행 및 종합점검, 작동기능점검	19	19	19	57	
		1동,2동 및 3동 정밀점검	25	0	0	25	
	계	44	19	19	82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대학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15.5	14.2	14	43.7	
		계	15.5	14.2	14	43.7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인증	0	11	11	22	2개동
		1동, 3동 정밀안전점검 및 2동 안전점검용역	25	0	0	25	
		계	25	11	11	47	
	③ 연구실안전사고	연구실 보험 및 안전유지관리비	105	94	95	294	
	계	105	94	95	294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보건사업(감염병포함)	45	45	45	135	
		계	45	45	45	135	
4. 범죄	① 일반범죄	-	0	0	0	0	
		계	0	0	0	0	
	② 성범죄	폭력예방교육특강료	8	16	16	40	
		폭력피해학생지원비	10	10	10	30	
	계	18	26	26	7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	0	0	0	0	
		계	0	0	0	0	
	② 중대재해	-	0	0	0	0	
		계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예비군사업	1.74	1.6	1.55	4.89	
		민방위사업	0.16	0.2	0.15	0.51	
		계	1.9	1.8	1.7	5.4	